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79호 2018. 8. 20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00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----- 4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1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

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-518(2017.12.18)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-1004(2018.8.3)로 승인된 「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(032-560-4767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. 8. 16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□ 도시재생활성화계획

1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178-12번지 일원
2. 면 적 : A=100천㎡
3. 사업목표 : 민, 관,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
4. 추진전략
 - 1).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
 - 2). 노후 건축물 물리적 개선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
 - 3).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인적 자원 구축
 - 4). 주민 및 청년의 창업 등 기회 부여를 위한 공간 및 교육 제공
 - 5).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육성을 통한 지원종료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유도
5. 사업기간 : 2018. ~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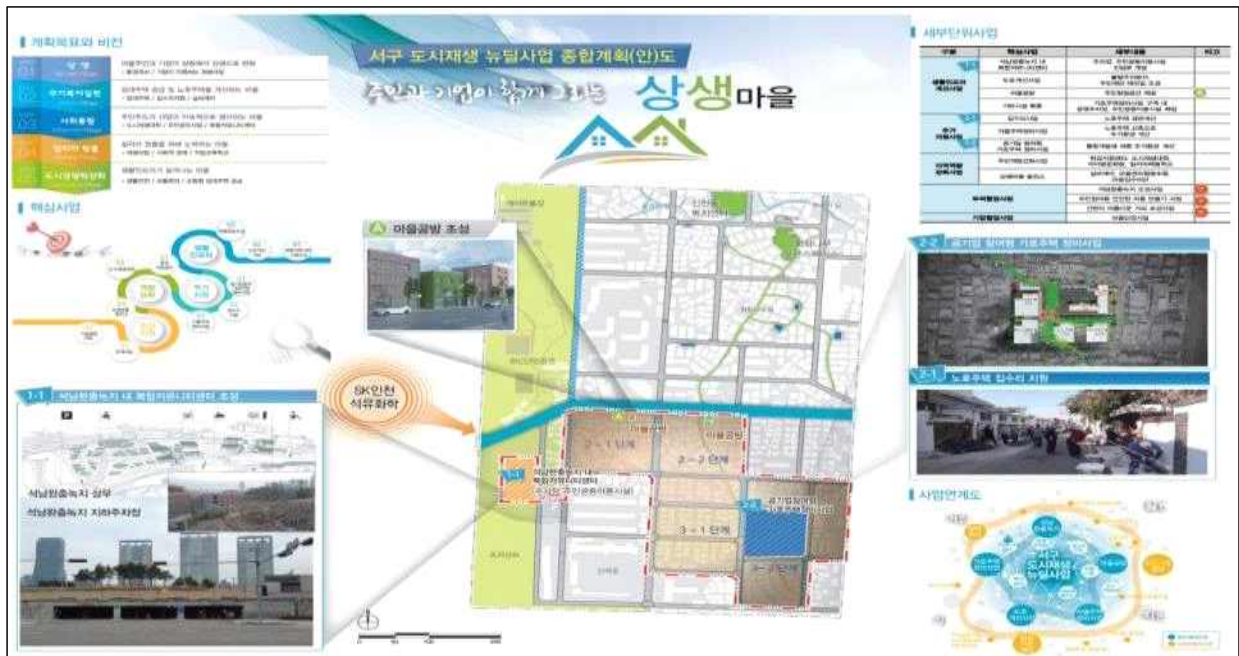
붙임 인천 서구 상생마을(주거지지원형) 활성화계획 내용 요약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

- (위치/면적)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178-12번지 일원 / 100천㎡
- (지역진단) 신도시개발, 기반시설 부족, 건축물 노후로 인구유출 및 노령화가 심각하나 지역 주민 참여의지가 높고, 부지확보 기 완료
- (비전·목표) 민, 관,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
- (추진전략)
 1.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
 2. 노후 건축물 물리적 개선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
 3.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인적 자원 구축
 4. 주민 및 청년의 창업 등 기회 부여를 위한 공간 및 교육 제공
 5.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육성을 통한 지원종료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유도

- 마중물사업 : 석남완충녹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14건 / 200.0억원
- 부처협력사업 :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/ 383.0억원
- 지자체사업 :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건 / 6.8억원
- 공기업투자사업 : 가로주택정비사업 / 250.0억원
- 민간투자사업 : 주차장, 둘레길 등 조성사업 / 50.0억원

<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>

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1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봉수대로 339 외 1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도 열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08. 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200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우리 구 석남동 491-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(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8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사업시행계획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-3번지 외 7필지
 - 나. 구역면적 : 15,244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천희
 - 나.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, 3층
4.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
 - 가. 내 용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정비기반시설(도로, 주차장) 설치
 - 나.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13,029.5㎡
 - 2) 건축면적 : 2,894.0782㎡
 - 3) 연 면 적 : 84,785.3839㎡
 - 4) 층 수 : 지하4층, 지상29층
 - 5) 용 도 : 공동주택 8개동 511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다. 정비기반시설 계획

1) 도로,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
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
Ⅱ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Ⅲ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관리과(☎032-560-4733)

Ⅳ. 의견제출

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주택관리과 또는 석남3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